

'26년 하반기 국방부 주관 일반임기제군무원(2급) 채용 공고

국방부 직할부대 2급 군무원 직위인 국방보안지원단장, 국방부조사본부 참모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9일
국 방 부 장 관

1. 채용직위 개요

가. 채용 예정인원 (2개 직위, 2명)

채용 예정 직위	채용 예정 직급	채용 인원(명)	채용 기간*	근무 예정지	임용 예정일**
국방보안지원단장	일반임기제군무원 2급(행정)	1	2년	서울	'26.12월 이후 (예정)
국방부조사본부 참모장	일반임기제군무원 2급(행정)	1		서울	

* 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 직위가 폐지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.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

** 근무예정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2. 근거 법령

- 군무원인사법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, 공무원임용시험령 등

3. 응시자격 요건

가. 필수 응시요건 (최종시험예정일('26. 10. 29.) 기준)

1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.

- ① 군무원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-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-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○ 군무원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)
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) 응시연령 : 18세 이상 (2008. 12. 31. 이전 출생한 사람)

3)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

나. 직위별 응시요건

공통요건

응시하시는 모든분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- **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시험공고일(공고일 첫날)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**(시험공고일 첫날이 '26.9.9.이므로 '23.9.9. 이후 전역자면 해당)
- **군(공)무원요건, 학위요건, 부서단위 책임자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(공고일 첫날) 현재 퇴직(예정)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**(시험공고일 첫날이 '26.9.9.이므로 '23.9.9. 이후 퇴직자이면서 '23.9.9. 이후 관련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)
- 근무경력기간 계산과 학위·자격증 등 소지 여부는 **최종시험예정일('26.10.29.)** 기준으로 판단함.
-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.
- ※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학위증명서, 학위논문 국문 제목·초록·목차,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필수 (단, 논문 제출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必)
- ※ 학위요건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.
- **부서단위책임자경력요건은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(군인, 군무원 포함) 합산 불가**
- **아래 응시요건의 채용직위에 대해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 접수 불가**

응시요건

* 공통요건 충족 후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

채 용 직 위	주요업무 및 응시요건	
국방보안지원단장	주요업무	• 국방보안 관련 대책수립 또는 지원 업무 •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·지원 업무 • 인원, 문서, 자재, 시설, 지역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감사 업무 • 정보통신수단 및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감사 업무 • 군사보안 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업무
	응시요건	관련분야 국방보안정책·대책 수립, 보안감사/조사, 보안기술연구분야
		①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대령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중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	③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2급(상당)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관련 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3급(상당)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	⑤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8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12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채 용 직 위	주요업무 및 응시요건		
국방보안지원단장	응시요건	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(민간경력)	⑦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, 법인 또는 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* 부서단위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(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, 인턴·파트타임·단기간 근무자 제외)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, 경력조회(직명·관리직무·관리대상 직원 수 등)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
국방부조사본부 참모장	주요업무		• 조사본부 참모부·직할부대를 총괄하여, 지도·감독 및 각종 심의 주관 • 참모장으로서 조사본부장 보좌 및 부재 시 직무대리 • 조사본부 임무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업무 등
	응시요건	관련분야	수사, 경찰행정
		군인요건	①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대령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②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중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
		군(공)무원 요건	③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2급(상당)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④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3급(상당)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
		학위 요건	⑤ 수사, 경찰행정, 법학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8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수사, 경찰행정, 법학 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12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	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(민간경력)	⑦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, 법인 또는 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* 부서단위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(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, 인턴·파트타임·단기간 근무자 제외)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, 경력조회(직명·관리직무·관리대상 직원 수 등)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

4. 시험일정 및 방법

가. 시험일정

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9. 16.(수) ~ 9. 21.(월)	10. 22.(목) ※ 면접시험 계획 포함	10. 27.(화) ~ 10. 29.(목)	개별 통보

※ 시험일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사전 공지 또는 통보

※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
나. 시험방법

- 1) 제1차시험 : 서류전형
 -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 심사
- 2) 제2차시험 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)
 - 「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」 제21조(면접시험 등의 기준)에 따라 평가

5. 제출 서류

가. 제출서류 (필수제출 1) ~ 9), 선택 10) ~ 12))

- 1)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(붙임1)
- 2) 응시원서 1부 (붙임2)
 - * 반드시 10,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(우체국 등에서 구입)
 - 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*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 - *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이며,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제출
- 3) 응시요건 증빙자료 목록 및 서류(경력증명서, 학위증명서, 민간경력 증빙자료, 학위논문 국문 제목·초록·목차 등) 1부 (붙임3)
 - ※ 8쪽의 응시요건별 증빙서류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제출
 - ※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
 - ※ 증빙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, 경력증명서는 가급적 최근(3개월 이내)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과거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가능(단,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)
- 4) 이력서 1부 (붙임4)

5) 주요업적기술서 1부 (붙임5)

- ① 작성내용 : 채용직위와 관련된 응시자의 업무실적을 기술
- ② 작성분량 : A4 용지 2매 이내

6)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붙임6)

- ① 작성내용 : 임용 후 채용직위 수행계획
- ② 작성분량 : A4 용지 2매 이내

7)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 (붙임7)

8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(붙임8)

9) 응시표 수령을 위해 반드시 반신용 일반 편지봉투 동봉

* 봉투 겉면에 '등기발송용 우표 부착' 및 응시표를 수령할 '주소 및 우편번호 기재'
(우표 미부착, 주소 미기재·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)

10) 학위논문 요약서 1부 [학위요건 해당자만 필수제출] (붙임9)

11) 민간(사회)경력 검증 서류 [해당자만 제출]

12) 「응시자가 선택한 응시요건 증빙자료」 이외의 추가 증빙자료 [해당자만 제출]

나. 응시원서 제출 서류 제출방법

1) 제출기간 : '26. 9. 16.(수) ~ '26. 9. 21.(월)

2) 제출방법 :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

('26. 9. 21.(월)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)

※ 제출주소 : (우편번호 04383)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인사운영팀
고위군무원 인사담당 앞

- 봉투 규격은 일반 서류봉투 규격(24.5 cm × 33.5 cm)을 준수 (별첨 부착)

※ 반드시 제출 기간('26. 9. 16. ~ 9. 21.)의 소인분이 찍혀있어야 함.
(제출 기간 외 소인분은 인정하지 않음)

※ 직접방문, 기간이 경과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송함.

※ 응시원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고, 반드시 정부수입인지 첨부
(제출 기한 내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효처리함)

6. 보수 수준

가.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

- 1) 연봉한계액*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·결정
*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7.임기제공무원 가.일반임기제공무원
- 2) 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일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)

7. 기타 사항

가.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, 군인사법 및 공무원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다.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응시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라.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마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또한 제출자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이 취소되며, 당해 시험 무효 및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바.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
사.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 전일(前日)까지 현재 근무지에서 전역(퇴직)이 가능하여야 하며,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아. 응시요건 중복선택, 미선택,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자. 기타문의 : 국방부 군인사운영팀 ☎ 02-748-5145, 5393)

참고

응시요건별 증빙서류

□ 군인·군무원 요건 : 군 경력증명서 원본 1부

※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요망

- 현직 군인 또는 군무원 : 국방인사정보체계, 장병e음(PC, 모바일),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(<https://dcis.mnd.go.kr>) 군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, 제출
* 복무 확인서, 약식자격표 등 인터넷에서 응시자가 임의 출력한 서류는 미인정
- 전역(퇴직) 군인 또는 군무원 :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군경력증명서 발급, 제출
* 장병e음(PC, 모바일),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(<https://dcis.mnd.go.kr>)
*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방부 민원실 또는 계룡대 민원실로 발급 신청
*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발급 신청 (2~3일 소요)

□ 공무원 요건, 민간(사회) 경력자 :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1부, 민간(사회) 경력의 경우 진위 확인을 위한 검증서류 각 1부 * 응시요건과 관련 경력 형광펜 표시

〈 민간(사회) 경력의 경우 진위 확인을 위한 검증서류(①,② 모두 제출) 〉

- ① 4대보험(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) 중 1종의 자격득실 확인서
- ② 소득금액증명(국세청 발급)

- * ‘경력’은 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▲ 공공기관 ▲ 법인(외국법인 포함) 및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▲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, 개인사업자(장)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.
- * 해당 직책과 직무내용, 근무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,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.
- *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, 직무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(업무분장표, 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 등). 단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.
- * 경력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, 근무지 인사부서 연락처(전화, 메일) 기재(경력증명서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, 반드시 수기로 기재)
- *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(1일 8시간)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,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.
※ 단시간 근무(시간제 근무) 경력 산정 방법(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)
- 전일 근무 : 경력의 전부 인정
- 시간제 근무 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
* [예]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-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: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
- *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중복된 기간의 경력은 1개의 경력만 인정함.
- *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고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의료보험 자격 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.
- *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(번역, 번역사실 확인서) 및 진위공증서류(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) 등을 제출
- *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, 국·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
※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, 대학원의 석·박사 과정은 불포함
- * ‘법인’ 또는 ‘비영리민간단체’ 관련 경력 응시자는 ‘법인(단체) 등록증’ 및 ‘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경력’ 증빙자료(법인/단체 명의로 발급한 확인서 등) 제출

〈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〉

- ① (조직체계)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(의장, 부장, 책임연구원 등)
i)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(임시조직·TF팀 등)
ii)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(위탁업체 직원, 인턴, 임시직 제외)
- ② (업무권한) 부서장으로서 인사권(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)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
- ③ (근무형태)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
- ④ (증빙의무) ①~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

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
응시직위	성명
응시요건	군인/군(공)무원/학위/부서단위 책임자 요건 중 택1

■ 작성목록(총괄표)

목 록	제출유무
1.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(필수) * (붙임 1) 서식	
2. 응시원서 / 정부수입인지 (필수) * (붙임 2) 서식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	
3. 응시요건 증빙자료 목록 (필수) * (붙임 3) 서식	
4. 이력서 (필수) * (붙임 4) 서식	
5. 주요업적기술서 (필수) * (붙임 5) 서식	
6. 직무수행계획서 (필수) * (붙임 6) 서식	
7.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(필수) * (붙임 7) 서식	
8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필수) * (붙임 8) 서식	
9.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일반 편지봉투 동봉 (필수) * 봉투 겉면에 '등기발송용 우표 부착' 및 응시표를 수령할 '주소 및 우편번호 기재'	
10. 학위논문요약서 (학위요건 응시자필수) * (붙임 9) 서식	
11. 민간(사회) 경력 검증 서류(선택)	
12. 「응시자가 선택한 응시요건 증빙자료」 이외의 추가 증빙자료(선택)	

*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"○" 표시

* 제출기준(분량, 건수 등)에 위배(과소 또는 과다)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*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

☞ 위 순서대로 제출(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(스테이플러 사용금지) 집게로 집어 제출)

□ 학위요건 해당자 : 학위증명서(졸업증명서) 원본 1부, 학위논문 국문 제목·초록·목차 1부, 학위논문요약서 1부, 경력증명서 원본 1부

※ 학위요건으로 지원하더라도 앞쪽의 경력요건 해당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학위증명(논문초록 미제출 등),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.

- * 논문 제출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, 그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하며, 수료는 학위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.
- * 학위증명서에는 전공 분야(세부전공)가 표시되어야 하며, 외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(번역공증, 번역사실 확인서) 및 진위공증서류(한국연구재단 공증 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, 영사확인 등)를 받아 제출

□ 기타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 원본 1부(자격증, 어학성적증명서 등)

※ 자격증요건으로 지원하더라도 앞쪽의 경력요건 해당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.

- * 자격증은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, 사본 제출 가능하며 합격연도 및 회차가 보이게 제출
- * 발급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증빙서류만 인정

□ 폐업회사 경력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(①, ②, ③, ④ 모두 제출)

-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
-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* 중 1종
 - 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
- ③ 소득금액증명서
-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 내역 등)

[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(hometax)]

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:

-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-사실증명신청(1번) → 사실증명(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)

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:

-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신청-소득금액증명(2번) → 근로자소득용 발급(발급기한 설정) ⇒ 폐업 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→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

응시요건 증빙자료 목록 [예시]

※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(예시)

채용직위	응시요건
000장	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대령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중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... ⑥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총 경력이 12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,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[작성방법]

① 응시 내용 및 응시요건

성명	응시직위	응시요건
김○○	000장	① ~ ⑦ 자격 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요건 하나를 공고문 내용대로 그대로 기술

※ 예를 들어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

성명	응시직위	응시요건
김○○	000장	①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, 대령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※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직접 기재

② 응시자격요건 증빙 제출 서류

1) 군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

제출자료 목록	내 용
1. 경력증명서 1부.	• 대령 진급일 : '00.0.0. / 전역(예정)일 : '00.0.0. ① 00부대 000담당('15.3.1. ~ '19.12.31. / 00년00월00일) ② 00부대 000과장('20.1.1. ~ '22.12.31. / 00년00월00일) ※ 군인 요건은 군경력만 가능

2) 군(공)무원 요건

목록	내 용
1. 경력증명서 1부.	• 3급 임용일 : '00.0.0. / 퇴직(예정)일 : '00.0.0. ① 00기관 000담당('15.3.1. ~ '16.12.31. / 00년00월00일) ② 00회사 000과장('17.1.5. ~ '18.12.31. / 00년00월00일) ③ 00회사 000과장('19.6.20. ~ '22.12.31. / 00년00월00일) ※ 군(공)무원요건은 군(공)무원 경력만 가능

3) 학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

목록	내 용
1. 학위증명서 1부. 2. 경력증명서 1부.	• 000대학교 000 석사('00.0.0.) ① 00부대 000담당('10.3.20. ~ '16.12.31. / 00년00월00일) ② 00회사 000담당('17.1.15. ~ '23.6.30. / 00년00월00일) ※ 만약 석사학위 취득 후 총 경력 12년 중 관련 분야의 군부대 경력(병사근무 제외)과 민간회사 경력을 합해서 12년 이상이 될 경우 위와 같이 표시 ※ 군부대 경력(병사근무 제외) 또는 민간회사의 둘 중 하나의 경력이 12년이 되는 사람은 해당 경력 하나만 기재해도 됨

4) 부서단위 책임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

목록	내 용
1. 경력증명서 1부.	① 00기관 000담당('15.3.1. ~ '16.12.31. / 00년00월00일) ② 00회사 000과장('19.6.20. ~ '22.12.31. / 00년00월00일) ※ 부서단위 책임자 요건은 민간경력만 가능

※ “① 해당 응시요건”을 증빙할 수 있는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고, 증빙자료 제출

③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소속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지 소속 근무지 인사부서에서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○ 표시

가능	불가능
○	

2026. . .
제출자 성명 ○ ○ ○ (서명 또는 인) 자필서명

이 력 서

가. 공통사항				
응시 번호	작성불요	응시 요건	군인/군(공)무원/학위/부서단위 책임자 요건 中 택1	성명

나. 응시자격				
자 격 중	자격증명	자격증 취득(예정)일	자격 검정기관	
경 력	근무기관	근무기간	직 위	담당업무
학 위	전공분야	학위 취득(예정)일	학위 종류	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주요업적기술서

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. (최근의 실적(주요업적 및 특기사항)부터 기술)
■ 작성요령 - 한글(hwp) 양식으로 작성할 것 -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- 크기는 13포인트 / 글자색은 검정색 - 줄간격 160%로 작성할 것 ■ 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직무수행계획서

자신의 지식·경험·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자신의 지식·경험·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,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.

■ 작성요령

- 한글(hwp) 양식으로 작성할 것
-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
- 크기는 13포인트 / 글자색은 검정색
- 줄간격 160%로 작성할 것

■ **(유의사항)**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작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작성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

1.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본인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, 본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·학위증명서·자격증 등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,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(1) 제공받는 기관 : 학위, 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 제출 자료 발급 기관
- (2) 제공목적 : 제출자료 진위 확인
- (3) 제공하는 항목 : 학위, 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
- (4)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
- (5)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.

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2. 효력인정 동의서

본인이 서명·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2026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국 방 부 장 관 귀하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■ 본인은 군무원을 지원한 자로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거 선발담당기관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해당란에 ☒ 표시

☒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: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: 국방부 군인사운영팀
 - 수집 및 이용 목적 : 응모한 직위의 시험자료 활용 및
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
 - 수집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*, 연락처, 주소, 병역사항,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·경력·
자격·면허사항, 4대보험 자격득실, 소득금액증명, 외국어성적·논문·수상실적 등
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
 - 보유 및 이용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
 -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
- *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	주민등록번호	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3조

☒ **개인정보 제3자 제공 : 동의함** ☐ **동의하지 않음** ☐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(자) : 지원자의 경력 및 학력 증명서 발급 기관 등
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: 응시자의 제출자료 진위여부 확인
 - 수집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*, 연락처, 주소, 병역사항,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·경력·자격·면허사항, 4대보험 자격득실, 소득금액증명, 외국어성적·논문·수상실적 등
 자격 조화(검증)에 관한 사항
 - 보유 및 이용기간 :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
 -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
- *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	주민등록번호	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3조

2026년 월 일
 작 성 자 성 명 (서명 또는 인)

학위논문요약서(석사, 박사)

학위개요	○ 논문제목 · 한글명 : · 영문명 : ○ 심사 연월일 : ○ 지도교수 : ○ 등재 사이트(RISS, KCI 등) :
주요내용 요약	
I. 연구목적 및 배경 1. 가. 1) 가) (1) (가) II. 연구내용 III. 연구결과의 활용도(구체적으로)	
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. 2026. . . 응시자 : (서명 또는 인)	

※ 본 채용에 지원한 학위(석사 또는 박사) 논문만 제출,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

[별첨]

보내는 사람

받는 사람

[우] 04383

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
국방부 군인사운영팀

[군무원 채용 시험 제출서류 재중]

* 채용 직위 : ○○○○장

고위군무원인사담당 앞